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계획 전략¹⁾

변 병 설²⁾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서 론

최근 국토의 난개발이 발생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끊임없는 논쟁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도시계획 등의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전체적인 틀이 바뀌고 있다.

국토계획의 경우 1990년대부터 이루어져 온 국토의 난개발에 대한 반성과 환경과 보전을 고려한 국토이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 환경과 개발의 통합,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기존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2002년 2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으로 명명)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도시계획체계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구분없이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으로 일원화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건교부의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과 보조를 맞추고, 기존의 사후관리와 통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정책으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하

여 선진화된 환경정책이념을 법규범화하고, 국가, 시·도, 시·군·구차원의 환경계획을 구체화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토환경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계획체계가 국가환경종합계획 - 시·도환경보전계획 - 시·군·구환경보전계획으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국토·도시계획체계의 변화와 환경계획체계의 변화에 맞춰 환경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와 내용도 변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내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시도자연환경보전계획 - 시군자연환경보전계획을 현재 수립되고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을 보전·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환경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raig Elliott와 Andrej udove(2004)의 슬로베니아의 자연 보호와 공간계획연구에서 슬로베니아는 1986년의 국가 공간 계획(National spatial plan: NSP)을 통해 자연보호를 위한 많은 보

1)Sustainable Planning Strategies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2)BYUN, Byungseol, Inha University, E-mail: byun@inha.ac.kr

호 구역을 설정하는 등 노력하였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구역 정책이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실패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간계획(NSP)이 지금까지 보호구역의 발전에 주요 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새로운 슬로베니아의 국가공간계획은 중부와 동부 유럽의 정책과 구별된다. 공간관리 규제는 자연보호에 대한 주민참여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원활한 관계 즉, 재정지원과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 자연보호를 지원하도록 계획되어졌다. Oszlanyi *et al.*(2003)은 중앙과 동유럽에서의 자연보전연구에서 체첸, 슬로바키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리고 루마니아 등의 다양한 자연보호 형식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Natori *et al.*(2003)의 일본 농촌 지역들의 자연보호 연구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하였다. 하나는 토지이용 가이드라인과 지역 매핑 형식의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참여 연구를 통해 연구자와 정부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시각적인 토지이용관점과 생태학적 토지이용관점을 통합하는 전략을 계획하였다. Rookwood(1995)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경관계획연구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경관 계획은 사후복원중심의 환경대책이 아닌 사전예방적인 계획이며, 실용적일 뿐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과 정보를 제시하기 보다는 처방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정치적 지원과 이용가능한 자원의 관점에서 실행적이며 강력한 실행과정과 규제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연환경보전계

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지자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보전계획이 국토·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강구하고자 한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자연환경보전계획 현황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중기종합계획(5년)으로서, 동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및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이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자연환경보전분야의 하위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수립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 제2항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향후 5년간 추진될 중기실천계획이며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이다.

1.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은 보호되

고, 생물다양성·생태계 및 수려한 자연경관 등은 보전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환경보전위원회(동법 제36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 제2항) 즉, ①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 ②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 ③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④ 산·하천·습지·농지·도서·해양 등에 있어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⑤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 활력의 증진 및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여기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연구·조사기관의 확충,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조달 및 투자의 촉진 등을 포함한다.

자연환경보전방침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을 실현하며 동방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과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

게 된다.

3.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와 제1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는 매 5년마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및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이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자연환경보전분야이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① 자연환경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②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시책, ⑤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⑥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 자연환경보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2002년 1월에 수립하였다. 현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시도자연환경보전계획 - 시군자연환경보전계획(10년) 수립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건강하고 균형된 자연환경의 조성이며, 자연환경 보전관리기반 구축, 친환경적 국토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 자연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보호 교육·홍보 강화, 남·북한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의 6대 실천목표가 수립되었다.

표 1. 자연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실천 목표	중점 추진 과제
1. 자연환경 관리기반 구축	· 법령·제도 등 관리체계 정비 · 자연환경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 자연환경보전 기술개발 및 연구능력 강화 · 자연환경보전 업무능력 향상
2. 친환경적 국토관리	· 전국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 도시·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과 개발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강화	· 3대 핵심생태축 보전 및 관리 강화 ·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 강화 · 야생 동식물 관리체계 통합 개편 · 생물자원 관리체계 개선 · 토양환경 관리 강화
4. 자연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태관광의 육성 · 보전중심의 자연공원 관리 · 주요 자연자산의 주제 공원화
5. 자연보호 교육·홍보 강화	· 자연사랑 범국민운동 전개 · 자연학습 및 홍보 활성화 · 민간단체 및 주민참여 확대
6. 남·북한 및 국제협력 강화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 국제 교류·협력 강화

4.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수립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 제2항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향후 5년간 추진될 중기실천계획이며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이다.

1999년 5월에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이다. 개정전인 구(舊) 자연환경보전법(1991.12.31 법률 제4492호)의 제11조 제3항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계획(1994-2003)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강원도, 전라북도 등이다. 충청남도는 환경보전 종합대책 기본계획에 의한 자연환경부

문의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계획은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산·바다·강을 잇는 생태네트워크 조성, 훼손된 도심 생태공간 복원,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 만들기라는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투자사업 10개, 시책사업 11개를 제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분야별 실천계획을 자연환경 보전기반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도시녹지 및 시민 휴식공간 확충, 자연경관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범시민 자연환경 보전활동 참여 등으로 나누고 각 분야에 대해서 사업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는 계획 분야를 생태하천 조성, 해변 친수공간 조성, 공원·녹지 확충, 갯벌 보전, 생태관광 및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의 확충, 자연친화적 개발사업 유도, 자연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강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등으로 나누고 각 분야에 대한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시책사업 4개와 투자사업 9개를 제시하였다. 울산광역시는 분야별 실천계획을 자연환경 관리기반강화,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분야에 대하여 일반현황, 중기개선목표 및 추진대책, 세부실천계획으로서 시책사업과 투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의 문제점

이상의 현황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째, 국토 및 도시계획과 연계가 부족하다. 자연환경은 동일한 공간(경관)과 생물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행정청들의 계획법 및 규제법과 개발법들이 교차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법·계획만으로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지도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데, 현재의 자연환경보전계획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계획이 자연환경의 '보전'에 국한시키고, '점(點)의 사고'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자연'의 범주를 축소시키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공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토 및 도시계획법제와 관계정립 및 연계에 실패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계획수립체계상에 문제가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시·도 단위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수립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체계를 보면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수립,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의한 시·도의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시·도의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고려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으로 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의하여 수립하는 시·도의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고 실천계획이어서 계획에 담을 수 있는 내용과 수준에 한계가 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보더라도 시·도의 자연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계획의 내용과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위사업을 체계적인 구분 없이 모아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환경부는 시·도의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작성지침'을 시달하여 시·도가 이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작성지침'이 구체적이

지 못한 실정이다.

셋째, 자연환경보전계획 내용상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다. 시·도가 작성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단위사업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개발계획·사업과의 연계, 녹지축을 포함한 생태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이 시·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에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친환경적 국토관리' 분야에 전국토의 생태네트워크 구축, 도시·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도시녹지 및 소생태계의 조성을 확대하고 도시 Biotop 네트워크화 구상추진 등), 환경과 개발의 통합관리체계 구축(국토의 사전예방 환경정책 기능 강화,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등),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기법 개발·보급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은 선언적 수준이며 이를 전국 및 지방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진한 실정이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과제

자연환경보전계획과 국토·도시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 강화

현행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를 보면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의 순(順)으로 되어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계획체계는 국가환경종합계획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시·도환경보전계획 - 시·군·구환경보전계획으로 되어 있다.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와 자연환경보전계획체계의

연계는 (1) 국토종합계획(20년) - 국가환경종합계획(10년) - 전국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10년), (2) 도종합계획(10년) - 시·도환경보전계획(10년) - 시·도자연환경보전계획(5년), (3) 도시기본계획(10년) - 시·군·구환경보전계획(10년) - 시·군·구자연환경보전계획(5년), (4) 도시관리계획(5년) - 경관생태계획(5년), (5) 지구단위계획 - 녹지계획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시·도자연환경보전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는 시·도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시·도자연환경보전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는 국토·도시계획보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자연환경부문은 전국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국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시·도자연환경보전계획, 시·군·구자연환경보전계획, 경관생태계획, 녹지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국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시·도자연환경보전계획, 시·군·구자연환경보전계획, 경관생태계획, 녹지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 및 도시계획과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양 계획의 수립주체는 상대계획의 수립 시 협의 및 참여가 필요하다.

계획수립체계의 개편

시·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계획의 실효성이 적은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시·도 자연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시·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그대로 놓고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시·도 단위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전국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과 시·도 자연환경보전계획, 시·군·구자연환경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

자연환경의 여건변화와 전망에 부응하는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계획의 기초 및 목표, 계획의 과제 및 전략, 계획의 추진방향 및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환경성평가를 통한 국토환경지도의 작성과 이를 자연환경계획에 활용한다. 비오뎀지도의 작성을 통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자연환경보전계획과 국토·도시계획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비오뎀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내용, 조사 및 작성에 유의할 사항, 도면화 방법 및 기준, 국토·도시계획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을 제시한다. 또한, 국토통합생태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일원, 도서·연안지역의 3대 핵심 생태축의 구축방안, 도시·농촌의 자연생태계를 보전·복원하여 핵심생태축과 연결한다. 지역의 핵심녹지축과 보조녹지축을 연결하여 광역녹지축을 형성한다. 기타 자연환경관리기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자연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대한 국가수준의 계획과 지방수준의 계획의 유기적 연계와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결 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제 전 인류 공동의 윤리규범으로서 명분을 지니게 되었으며 세계 경제흐름을 주도할 중요한 인자로 자리잡고 있다. ESSD의 근본원리는 인류와 국가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개발행위가 환경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보전 목적은 생물자원의 보전과 이들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세대간·지역간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한 실용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을 보전·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보전계획이 국토·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매체중심에서 공간환경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박용하 외. 2001. 21세기 자연환경보전정책 발전방향. 환경부.
- 변병설 외. 2001.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 변병설 외. 2002.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환경부.
- 변병설 외. 2003.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
- 변병설 외. 2004.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연구. 환경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서울시 비오톱 현황 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 이상문 외. 2000. 친환경적 도시계획수립 방안 연구. 환경부.
- 이상문 외. 2004.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성 확보 방안 연구. 환경부.
- 이양주. 2003. 생물서식공간 조사 및 조성지침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정희성 외. 2003. 국가환경종합계획 기본틀 마련. 환경부.
- 최영국 외. 200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1995.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 환경부. 1997. 제2차 자연환경 전국기초조사 지침. 환경부.
- 환경부. 2002.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환경부.
- 환경부. 2003.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 Sukopp, H. and Weiler, S. 1988. "Biotop Mapping and Nature Conservation Strategies in Urban Area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5: 39-58.
- Craig Elliott and Andrej Udov. 2004. *Nature Conservation and Spatial Planning in Slovenia: Continuity in Transition Land Use Policy*, In Press.
- Yoji Natori, Wataru Fukui and Mutsumi Hikasa.

2003. Empowering Nature Conservation in Japanese Rural Areas: A Planning Strategy Integrating Visual and Biological Landscape Perspectiv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Paul Rookwood. 1995. Landscape Planning for Biodiversit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31(1-3): 379-385.

Pressey, R.L. and Nicholls, A.O. 1998. Efficiency

in Conservation Evaluation: Scoring Versus Iterative Approaches. *Biological Conservation*, 50(1-4): 199-218.

Wolfgang Haber. 1973. Conservation and Landscape Maintenance in Germany: Past, Present, and Future. *Biological Conservation*, 5(4): 258-264.